

**불임****핵심방역수칙(2단계)****① 유흥시설 등 (유흥·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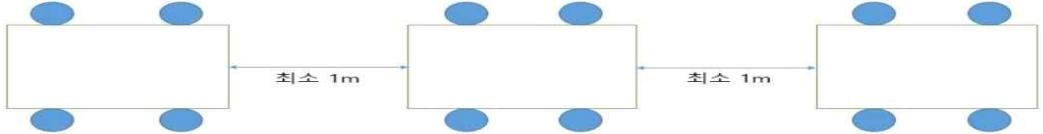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유흥시설 등 (유흥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	<p>① 운영제한시간<sup>*</sup> 준수 * 22시~익일 05시</p> <p>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</p> <p>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p> <p>⑤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p> <p>⑥ 방역관리자 지정</p> <p>⑦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/p> <p>⑧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,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⑨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</p> <p>⑩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⑪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p> <p>⑫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** 이용인원 산정 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⑬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</p> <p>⑭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</p> <p>⑮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           ·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          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         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          ·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          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</p> <p>⑯ 실내 흡연 금지 안내</p>	<p>① 운영제한시간<sup>*</sup> 준수하여 이용 * 22시~익일 05시</p> <p>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- 전자출입명부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</p> <p>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p> <p>④ 마스크 착용</p> <p>⑤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 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</p> <p>⑥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⑦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</p> <p>⑧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</p> <p>⑨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사항 모두 준수           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         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         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</p> <p>⑩ 실내 흡연 금지</p>

\*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## ② 음식점 및 카페 등 (휴게·일반음식점·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음식점 및 카페(무인카페 포함) (휴게일반음식 점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)	<p>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p>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0㎡ 이상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</li> <li>- 150㎡ 미만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p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p> <p>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p> <p>④ 방역관리자 지정</p> <p>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개시 및 준수 안내</p> <p>⑥ 1일 1회 0상증상자증명 및 유증상자 토큰조작(대장작성)</p> <p>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p> <p>⑧ <b>50㎡ 이상 시설 대상</b> I)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II) 좌석 한칸 띄워앉기 III) 테이블 간 한칸 띄워앉기 IV)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/p> <p>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</p> <p>⑩ 주문 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문 계산대 앞 칸막이·기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(비탁표시)</li> </ul> <p>⑪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</p> <p>⑬ 2인 이상 커피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(강력권고)</p> <p>⑭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</p>	<p>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</p> <p>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</p> <p>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p> <p>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p> <p>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p> <p>④ 마스크 착용</p> <p>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,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</p> <p>⑤ <b>50㎡ 이상 시설 대상</b>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안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</p> <p>⑥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p> <p>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(권고)</p> <p>⑧ 2인 이상 커피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(강력권고)</p>
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(일반휴게음식점)	<p>①~⑭ 공통</p> <p>⑮ 시설 신고면적 4㎡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</p>	<p>①~⑧ 공통</p> <p>⑯ 시설 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</p>
부페·추억용	<p>①~⑭ 공통</p> <p>⑯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</li> </ul> <p>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	<p>①~⑧ 공통</p> <p>⑯ 공용잡채접시수저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p> <p>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p>

## 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선 - 가림막)	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